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맹진영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맹진영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개인정보 보호 사무처리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